

5. 입대휴학 및 제대복학

* 입대휴학

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기간에 휴학하는 것으로 입대 전에 학사서비스(GLS)로 신청하여야 하며, 입대일자부터 입대휴학이 시작됩니다.

- 입대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 - 입대일 2주 전부터 학사서비스(GLS)로 신청이 가능하며, 입영통지서 등 입대휴학 증빙서류를 신청 시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.
 - 입대휴학 신청 없이 입대할 경우,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.
-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,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
 - 입대 후 훈련소에서의 신체검사 재검 등의 사유로 귀향조치 되거나, 본인 신청, 기타의 사유로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.
 - 재학상태에서 입대휴학 한 학생이 귀향 또는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 다시 재학생 신분으로 환원되므로 즉각 학업에 복귀하여 해당 학기 수업 및 시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 - 귀향 또는 입영연기 조치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학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, 제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★ 입대휴학자 인정학점

학생이 수업일수 3/4선 경과 후 종강일 이내에 입대휴학 할 경우, 지금까지 다닌 학기의 성적을 받고 복학 후 다음 학기를 등록할 것인지, 아니면 지금까지 다닌 학기의 성적을 포기하고 복학 후에 해당 학기를 다시 이수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.

-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인정을 희망한 경우
 -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은 정상적으로 부과되며, 차후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 - 입대 전 학생 스스로 각 과목별로 담당 교강사와 상의하여 입대 후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(개별시험, 리포트제출, 개별발표 등)를 취해야 합니다.
 - 교과목 담당교수가 중간시험성적, 출석 상황, 과제보고서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성적이 그대로 부과됩니다.

- 휴학하는 학기의 성적불인정을 희망한 경우
 -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성적을 부과하여도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
 - 휴학 당시의 학기를 다시 재학하여야 하므로, 제대복학 후 무료복학 대상자로 조치합니다.

- 신청 방법
 - 학사서비스(GLS)에서 입대휴학 신청 시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합니다.



★ 제대복학

입대휴학하여 병역의 의무를 필한 학생이 제대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,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.

• 제대복학 준비서류

- 병적사항이 기재된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또는 전역증

• 제대복학 절차

- 학사일정에 정해져 있는 복학기간에 제대복학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.
-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복학 신청 및 수강신청 사항이 일괄 삭제될 수 있습니다.

• 개강 후의 제대복학의 최종기한

-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에 실질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해 수업일수(3/4)를 채울 수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/4선을 초과하여 전역할 경우에도 조기 제대복학이 가능합니다. 단, 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/4 경과 후에 있는 자는 복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전역일이 수업일수 1/4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, 전역일이 수업일수 1/4 경과 후 2/4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와 휴가증(휴가증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대장 추천서)을 학사서비스(GLS)에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의 경우 복무기간 종료 후 학사서비스(GLS)를 통해 전역증 혹은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• 입대휴학 만료 제적처리

-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입대휴학 만료 제적처리됩니다.